

교재명	[2021]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발행일	2021. 1. 3. (1쇄)
작성일	2021. 1. 7. / 1. 14.

2021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개정 법률에 따른 수정사항과 정오사항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적혀있는 개정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데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각 쇄 확인 방법

- 1. 교재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판권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2. 하단 박스에 적혀있는 O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인쇄'라고 적혀있는 교재는 '초판'입니다).

2021년 1월 7일 수정사항

쪽 /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306p / (4)	(4)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 <mark>공원</mark> ·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4)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 <mark>구거(溝渠:도랑)·공원</mark> ·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법령 개정
	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이하 생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이하 생략)	(21.01.05. 개정)
330p / (1)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mark>자력</mark> 개량방법)으로 …(이하 생략)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mark>현지</mark> 개량방법)으로 …(이하 생략)	정오 사항
	2 회계감사	2 회계감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u>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u>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u>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u>	
	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시</u>	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u>	
	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	<u>기간 이내에</u>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법령 개정
400p / 2	계감사를 <u>받아야</u>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의 회계감사를 <u>받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u>	(21.01.05. 개정,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1.07.06.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	
	다음의 ② 및 ③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한다(법 제112조 제1항).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다음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12조 제1항).	



409p / (4) - ⑥	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②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③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⑥ 법 제112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①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②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③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④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이내 ⑥ 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법령 개정 (21.01.05. 개정, 21.07.06. 시행)
434p / (4) - ④	④ 높이 <u>6m</u> 를 넘는 장식탑, <u>기념탑</u>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u>4m</u> 를 넘는 장식탑, <u>기념탑, 첨탑,</u>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36p / [별표 1] 1 ② - ©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mark>바닥면적</mark> 의 합계가 <u>330m²</u>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u>이하인 것</u>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u>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u> 합계가 <u>660m²</u>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u>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터</u>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법령 개정 (20.12.15. 개정, 21.03.16. 시행)
544p /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u>조정서의</u> <u>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u>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개정 (20.12.22. 개정, 21.06.23. 시행)



545p / ③ - ⑦ 584p / ① - ⓒ - ⑥	①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생략)… 그 소송이 철회되면 <mark>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 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mark> (법 제9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mark>자력</mark> 개량방법으로 …(이하 생략)	①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생략)… 그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9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법으로 …(이하 생략)	법령 개정 (20.12.22. 개정, 21.06.23. 시행) 정오 사항
590p / (3) 추가	(2) 착공신고 밑에 (3) 추가	(3) 통지기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위 (2)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3항).	
590p~591p / (1)~(2)	(1) 취소사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생략)… (법 제16조 <u>제3항</u>). (2) 타당성 검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생략)… (법 제16조 <u>제4항</u>).	(1) 취소사유사업계획승인권자는 …(생략)… (법 제16조 제4항).(2) 타당성 검사사업계획승인권자는 …(생략)… (법 제16조 제5항).	법령 개정 (21.01.05. 개정)
591p / 보조단 [추가]	(2) 타당성 검사 옆 보조단 빈 공간에 내용 추가	[추가] 위 (1)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확보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6항).	
610p / (3) 추가	(2) 토지의 가격 밑에 (3) 추가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법 제78조의2)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령 개정 (21.01.05. 개정, 21.07.06. 시행)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본문 내용 수정 및 ①, ⓒ 추가	
	①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공급	①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u>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	
	<u>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u>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	외한다. 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 …(이하 생략)	
	다. 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 …(이하 생략)	①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법령 개정
615p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1.01.05. 개정,
(3) - 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21.07.06. 시행)
		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21.07.00. (18)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001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생략)··· 이 경우 <u>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u>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생략)… 이 경우 <u>투기과열지구는</u> 그 지정	
621p /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mark>범위로 한다</mark> (법 제63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mark>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mark>	
1 - (1)	제1항).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 G/2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법 제63조 제1항).	
	①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은 …(생략)… 이 경우 다음의 ①에	①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생략)… 이 경우 다음의 ③에	
623p /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	
2 -(1) - 1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	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	
	는 최소한의 <u>범위로 한다</u> (법 제63조의2 제1항).	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3) 지정해제	<u>조정할 수 있다</u> (법 제63조의2 제1항). 수정 전 ②→③ 변경, ② 내용 추가	법령 개정
			(21.01.05. 개정)
	①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하 생략)	①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하 생략)	
625p / (3)	② 요청 : 조정대상지역으로 …(생략)… (법 제63조의2 <u>제7항</u>).	②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	
		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	
		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	
		<u>다(법 제63조의2 제7항).</u>	
		③ 요청:조정대상지역으로 …(생략)… (법 제63조의2 <mark>제8항</mark>).	



2021년 1월 1	14일 수정사항		
-]에서 ' <mark>성장관리방안 → 성장관리계획</mark> '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법령 개정 (21.01.12. 개정, 21.07.06. 시행)
27p / 허가대상 개발행위	②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mark>정지</mark>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②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mark>정지(땅고르기)</mark> ·포 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법령 개정 (21.01.05. 개정)
30p / 보조단 [추가]	보조단 하단 빈 공간에 내용 추가	[추가]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8p / (1) 첫 번째 박스	⑤ 내용 추가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3p / 보조단	[추가] 건폐율의 완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 이하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77조 제5항). [추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영 제84조 의3) • 31회 1. 법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2. 법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①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②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 이하	[추가] 건폐율의 완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 이하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77조 제5항). [추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영 제84조 의3) ◆31회 1. 법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2. 법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①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②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 이하	법령 개정 (21.01.12. 개정, 21.07.06. 시행)



	,	,	
107p / (2) 첫 번째 표	100% 이하. <u>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u> 계획관리지역 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7p /	[추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 이하이고,	[추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 이하이고,	
보조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조례로 125% 이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조례로 125% 이내에서	
[추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5p / 5		⑥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 (1) 박스	⑥ 내용 추가	정하는 지역	법령 개정
127p / (8) - ① 박스	◎ 내용 추가	◎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1.01.12. 개정, 21.07.06. 시행)
160p / 2 ®	⑧ 교통처리계획	8 보행<u>안전 등을 고려한</u> 교통 처리계획	
164p / 6.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mark>건축물</mark> 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u>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을 건축 또는 용도변 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4조).	
166p / (2)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mark>정지</mark>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mark>정지(땅고르기)</mark>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법령 개정 (21.01.05. 개정)
175p~177p	(4) 성장관리방안	(4) 성장관리방안 내용 모두 삭제	
/ (4)	① 수립권자 ~ ④ 송부 및 열람	① 수립권자 ~ ④ 송부 및 열람	
175p / 보조단	[정리]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이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유도적성격의 계획을 말한다.	[정리]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이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 역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을 말한다.	법령 개정 (21.01.12. 개정, 21.07.06. 시행)



	[• · · • · · · · · · · · · · · · · · ·	T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제4절]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 성장관리계획구역		
	누는 논지지역 과리지역 논림지역 및 자연화경보저지역 중 다음이	
		법령 개정
		(21.01.12. 신설,
		21.07.06. 시행)
⑤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1.07.00. 시장)
(2) 지정절차		
① 의견청취+협의+심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	로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 법령 개정으로 기존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경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장관리방안(175p~
(법 제75조의2 제2항).		177p) 내용은 삭제되고,
② 지방의회 의견제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	[제4절]의 내용이 신설되
		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추가]로 별도 파일을 따
	·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	로 정리해두었으니, 학습
		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④ 지정고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제4절]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 성장관리계획구역 (1) 지정대상지역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제4절]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 성장관리계획구역 (1) 지정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75조의2 제1항).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⑤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지정절차 ① 의견청취+협의+심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75조의2 제2항). ② 지방의회 의견제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등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등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2 성장관리계획

(1) 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 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75조의3 제1항).

- 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②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③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 ④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 ⑤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건폐율 완화규정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 제75조의3 제2항).

- 계획관리지역 : 50% 이하
- │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 30% 이하

(3) 용적률 완화규정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 제75조의3 제3항).

(4)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법 제75조의3 제5항).

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법 제75조의4).

193p /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 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 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 또는 구(<mark>자치구를 말한다</mark>)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법 제113조 제2항).

(법 제113조 제2항).

법령 개정 (21.01.12, 개정. 21.07.06. 시행)



202p / (1) 첫 번째 박스	⑤의3, ⑦의3 내용 추가	⑤의3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⑦의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법령 개정 (21.01.12. 개정, 21.07.06. 시행)
252p / (1) 표 환지방식	1.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mark>분합</mark> ,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생략)	1.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 <mark>할·합병</mark> ,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생략)	법령 개정 (21.01.05. 개정)
500p / 보조단 [추가]	본문 ② 옥상광장 옆 보조단에 내용 추가	[추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영 제40조 제3항). 1. 본문 ②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① 다중이용 건축물 ② 연면적 1천m² 이상인 공동주택	법령 개정 (21.01.08. 개정, 21.04.09 시행)
500p / (2) - ③	③ 헬리포트 : 층수가 ···(생략)··· (영 제40조 제 <mark>3</mark> 항).	③ 헬리포트 : 층수가 ···(생략)··· (영 제40조 제 <mark>4</mark> 항).	
513p / (3) - ④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이하 생략)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 (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m² 이하로 한정),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이하 생략)	법령 개정 (21.01.08. 개정)